

요양기관설명회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안내

20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CONTENTS

- 01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 02 구입약가 산정 기준 및 방법
- 03 자주 묻는 질문



CHAPTER . 01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
-
-
-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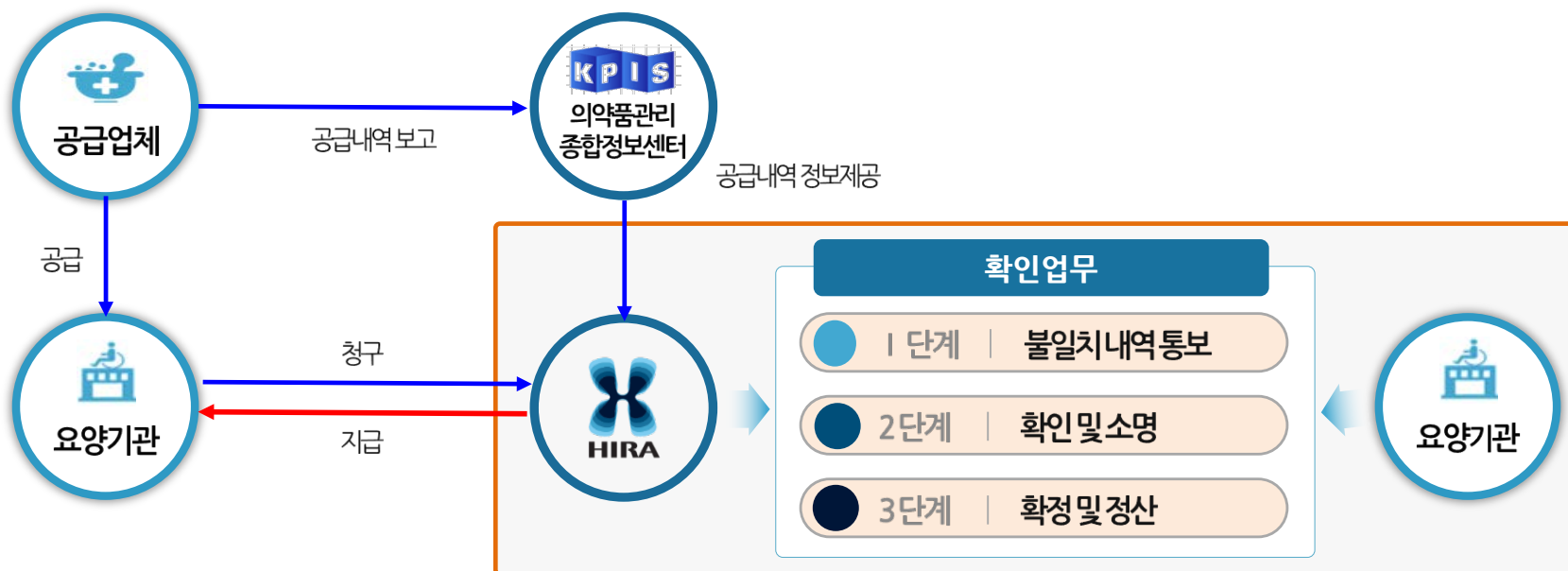
의약품 공급업체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공급-청구 불일치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정산·환수

가격관리

- 청구단가-공급단가 비교
- 구입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 정산(환수)

수량관리

- 청구내역 - 공급내역 비교
- 공급-청구의 수량 차이 정산(환수)



구입약가 사후관리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구입금액 등을 고려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2014. 8. 29.

제2조(구입약가의 산정)

대상 및 내용

■ 확인대상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 확인대상: 의약품별 청구단가와 해당 공급분기 가중평균가 상이건
 - 청구단가 > 공급 가중평균가
-

■ 확인내용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단가 및 공급 가중평균가 확인
 - 의약품별 구입내역 관련 구입처, 구입일자, 구입수량, 금액, 단가 확인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

확인 절차



청구약값
확인통보

심평원

- 청구단가와 공급가격 불일치 의약품 통보 (메일, FAX, SMS)
- 요양기관 확인기간
 - 1차 통보 10일
 - 2차 통보 4일



청구약값
확인 · 소명

요양기관

-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결과 입력
 - 공급신고맞음 · 착오
 - 단가변경
 - 기타
- 공급신고착오 또는 미확인인 경우 공급업체 추가 확인



최종약값
확정 · 정산

심평원

- 구입약가 확정
- 확정 후 확정단가보다 높게 청구한 건에 대해 차액 정산
-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CHAPTER . 02

구입약가 산정 기준 및 방법



구입약가 산정 기준 ①

■ 구입약가 = 분기 가중평균가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은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분기 가중평균가)을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단,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분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

구입분기	적용진료월
1/4분기(1월~3월)	5월 1일~7월 31일
2/4분기(4월~6월)	8월 1일~10월 31일
3/4분기(7월~9월)	11월 1일~다음해 1월 31일
4/4분기(10월~12월)	다음해 2월 1일~4월 30일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 제2조(구입약가의산정)

구입약가 산정 기준 ②

• 의약품 구입이 매 분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제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계속하여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의약품을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약제에 대하여는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범위에서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재고가 없는 의약품을 다른 단가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약제로 보아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 제2조(구입약가의산정)

구입약가 산정 방법 (최초구입)

• ○○요양기관 A의약품 구입 내역

- 2020년 2월 1일에 A의약품을 처음 구입하여 사용
- 2분기(4~6월)에는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계속 사용
- 2020년 12월 1일에 재고를 반품하고 새로운 단가로 구입

구입분기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수량
1/4분기	2020.2.1.	550원	100개
	2020.3.3.	500원	120개
3/4분기	2020.7.1.	500원	200개
	2020.8.1.	500원	100개
4/4분기	2020.12.1.	500원	-20개
	2020.12.1	650원	200개
	2020.12.30.	600원	100개

청구 →

진료월	가중평균가 적용분기	청구단가
2020년 2월 ~ 4월	2019년 4/4분기	550원
2020년 5월 ~ 7월	2020년 1/4분기	523원
2020년 8월 ~ 10월	2020년 2/4분기	523원
2020년 11월	2020년 3/4분기	500원
2020년 12월		650원
2021년 1월		650원
2021년 2월 ~ 4월	2020년 4/4분기	633원

설명

'20.2.1. 최초 구입으로 2019년 4분기 가중평균가를 산정할 구입내역이 없기 때문에 다음분기 가중평균가(2020년 1분기)가 생성되어 적용되기 전인 '20.4.30.까지 최초 구입한 가격인 550원으로 구입약가 산정

구입약가 산정 방법 (분기구입)

• ○○요양기관 A의약품 구입 내역

- 2020년 2월 1일에 A의약품을 처음 구입하여 사용
- 2분기(4~6월)에는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계속 사용
- 2020년 12월 1일에 재고를 반품하고 새로운 단가로 구입

구입분기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수량
1/4분기	2020.2.1.	550원	100개
	2020.3.3.	500원	120개
3/4분기	2020.7.1.	500원	200개
	2020.8.1.	500원	100개
4/4분기	2020.12.1.	500원	-20개
	2020.12.1	650원	200개
	2020.12.30.	600원	100개

청구 →

진료월	가중평균가 적용분기	청구단가
2020년 2월 ~ 4월	2019년 4/4분기	550원
2020년 5월 ~ 7월	2020년 1/4분기	523원
2020년 8월 ~ 10월	2020년 2/4분기	523원
2020년 11월	2020년 3/4분기	500원
2020년 12월		650원
2021년 1월		650원
2021년 2월 ~ 4월	2020년 4/4분기	633원

설명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 1분기 가중평균가인 523원으로 산정

$$\gg \{(550\text{원} \times 100\text{개}) + (500\text{원} \times 120\text{개})\} / (100\text{개} + 120\text{개}) = 523\text{원}$$

구입약가 산정 방법 (분기 미구입)

• ○○요양기관 A의약품 구입 내역

- 2020년 2월 1일에 A의약품을 처음 구입하여 사용
- 2분기(4~6월)에는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계속 사용
- 2020년 12월 1일에 재고를 반품하고 새로운 단가로 구입

구입분기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수량
1/4분기	2020.2.1.	550원	100개
	2020.3.3.	500원	120개
3/4분기	2020.7.1.	500원	200개
	2020.8.1.	500원	100개
4/4분기	2020.12.1.	500원	-20개
	2020.12.1	650원	200개
	2020.12.30.	600원	100개

청구 →

진료월	가중평균가 적용분기	청구단가
2020년 2월 ~ 4월	2019년 4/4분기	550원
2020년 5월 ~ 7월	2020년 1/4분기	523원
2020년 8월 ~ 10월	2020년 2/4분기	523원
2020년 11월	2020년 3/4분기	500원
2020년 12월		650원
2021년 1월		650원
2021년 2월 ~ 4월	2020년 4/4분기	633원

설명

2020년 2분기 구입내역이 없으므로 2020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0년 1분기 가중평균가 계속 적용

구입약가 산정 방법 (단가변경)

• ○○요양기관 A의약품 구입 내역

- 2020년 2월 1일에 A의약품을 처음 구입하여 사용
- 2분기(4~6월)에는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계속 사용
- 2020년 12월 1일에 재고를 반품하고 새로운 단가로 구입

구입분기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수량
1/4분기	2020.2.1.	550원	100개
	2020.3.3.	500원	120개
3/4분기	2020.7.1.	500원	200개
	2020.8.1.	500원	100개
4/4분기	2020.12.1.	500원	-20개
	2020.12.1	650원	200개
	2020.12.30.	600원	100개

청구 →

진료월	가중평균가 적용분기	청구단가
2020년 2월 ~ 4월	2019년 4/4분기	550원
2020년 5월 ~ 7월	2020년 1/4분기	523원
2020년 8월 ~ 10월	2020년 2/4분기	523원
2020년 11월	2020년 3/4분기	500원
2020년 12월		650원
2021년 1월		
2021년 2월 ~ 4월	2020년 4/4분기	633원

설명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년 3분기 가중평균가인 500원으로 구입약가 산정

12월 1일부터 4분기 가중평균가가 생성되어 적용되기 전인 2021년 1월 31일까지 재고 소진 후 새로 구입한 가격인 650원으로 구입약가 산정

구입약가 산정 방법 (분기구입)

• ○○요양기관 A의약품 구입 내역

- 2020년 2월 1일에 A의약품을 처음 구입하여 사용
- 2분기(4~6월)에는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계속 사용
- 2020년 12월 1일에 재고를 반품하고 새로운 단가로 구입

구입분기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수량
1/4분기	2020.2.1.	550원	100개
	2020.3.3.	500원	120개
3/4분기	2020.7.1.	500원	200개
	2020.8.1.	500원	100개
4/4분기	2020.12.1.	500원	-20개
	2020.12.1	650원	200개
	2020.12.30.	600원	100개

청구 →

진료월	가중평균가 적용분기	청구단가
2020년 2월 ~ 4월	2019년 4/4분기	550원
2020년 5월 ~ 7월	2020년 1/4분기	523원
2020년 8월 ~ 10월	2020년 2/4분기	523원
2020년 11월	2020년 3/4분기	500원
2020년 12월		650원
2021년 1월		650원
2021년 2월 ~ 4월	2020년 4/4분기	633원

설명

'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 $\{(650\text{원} \times 200\text{개}) + (600\text{원} \times 100\text{개})\} / (200\text{개} + 100\text{개}) = 633\text{원}$

구입약가 산정 방법

※새로운 구입단가 즉시 적용 시 주의사항※

- 반품 등으로 의약품의 재고가 없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단가로 구입했을 경우에 가중평균가가 아닌 새로운 단가를 구입일부터 청구단가로 바로 적용가능
 - 단,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재고 파악이 불가하므로 구입약가 확인 시 가중평균가와 청구단가를 비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불일치 건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새로운 단가로 구입 시 기존 재고가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고관리대장, 의약품수불대장 등) 및 거래명세서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구입약가 확인 시 '20년 3분기 가중평균가와'20년 11월 ~ '21년 1월 진료분 청구단가를 비교
'20년 3분기 가중평균가 **500원** < '20년 12월 ~ '21년 1월 청구단가 **650원** → 불일치 확인 대상으로 선정

구입분기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수량
3/4분기	2020.7.1.	500원 ★	200개
	2020.8.1.	500원	100개
4/4분기	2020.12.1.	500원	-20개
	2020.12.1	650원	200개
	2020.12.30.	600원	100개

청구
→

진료월	가중평균가 적용분기	청구단가
2020년 11월	2020년 3/4분기	500원
2020년 12월		650원 ★
2021년 1월		



CHAPTER . 03

자주 묻는 질문



1. 청구하기 전 가중평균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균가 메뉴에서 확인하고 싶은 분기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의약품 공급업체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된 사전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업체가 가중평균가 생성 이후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 가중평균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가중평균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여 가중평균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분기별 가중평균가(구입약가)가 원미만일 경우 단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산된 분기 가중평균가 원미만 단위에서 4사5입하여 가중평균가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4.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같은 분기 내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루어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을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구입단가와 구입처가 같은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033)739-2294~2298

감사합니다